

---

**「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」 제정안  
입법예고 의견제출에 대한 답변서**

---



2022. 4. 5.

**경 찰 청**

## 가. 차별금지사유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

- 제7조 차별금지 사유에 ‘성별정체성’, ‘고용형태’, ‘임신 또는 출산’, ‘출신국가 및 출신민족’, ‘건강상태’ 추가 및 사회적 약자에 ‘성소수자’ 추가 의견과 관련,
  -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“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”와 같이 법령에 모든 사항을 열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.
  - 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등 현행법령 및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마련하였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실천의 문제로 경찰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
## 나. 신체 수색·검증 관련 <사건과 관련없는 삭제>

- 신체 수색·검증시 대상자가 트랜스젠더인 경우 같은(법적) 성별의 경찰관 수색시 문제점 및 같은 성별의 성인을 참여시켰을 때의 문제점 등과 관련한 의견에 대해
  - 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124조(여자의 수색과 참여) 및 제141조(신체검사에 관한 주의)에 따른 것으로 체포현장 등 수색·검증을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하였습니다.
  - 체포·수색 현장에 같은 성별의 경찰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같은 성인의 수색 참여는 인권침해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.

- 또한, 유치장과 달리 체포현장 등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서장의 지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현장에 경직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.
- 아울러, 경찰청 유치장 업무 관련 준수사항에서는 성소수자의 성적 특성 및 본인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신체수색·분리수용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성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.
- 구체적 상황 및 대상자별 인권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지침 등을 통해 보완·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#### 다. 수사 서류 열람·복사 관련

-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 제공과 관련한 의견에 대해
  - 수사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 및 조사 당일 작성된 본인 진술조서에 대한 공개여부는 경찰수사규칙 제86조(수사서류 열람·복사)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 중복 규정을 피하고자 제정안에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.

**<경찰수사규칙(행안부령)> 제87조(수사서류 열람·복사)**

-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.
1. 공개 결정: 신청한 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·복사를 허용
  2. 부분공개 결정: 신청한 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·복사를 허용
  3. 비공개 결정: 신청한 서류 내용의 열람·복사를 불허용
-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, 그 변호인이 조사 당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 열람·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

## 라. 진술 영상녹화 관련

- 영상녹화 전 충분한 설명과 피의자가 영상녹화에 동의할 경우에만 영상녹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관련해서,
  - 형사절차에 영상녹화가 도입된 근본 목적은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보장하여 인권침해를 보장하기 위한 것<sup>1)</sup>이고, 영상녹화 의무대상의 확대에 관해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<sup>2)</sup>이기도 합니다.

1) 이재학, [영상녹화제도의 지위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및 사용에 관한 고찰], 서울대학교 법학 제58권제3호, '17년9월, 44면  
2) "경찰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문과정 영상녹화 실시함에 있어 「의무적 녹화」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"(17.7.14.)

- 또한, 현행 형사절차에서는 성폭력 범죄 등 특별법에서 영상녹화물의 본증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법정에 현출되지 않습니다.
- 아울러, 형사소송법 규정에서 더 나아가 제정안 제38조 제3항에 모든 피의자에 대해 조사하기 전 희망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, 희망하였더라도 제2항에 따라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영상녹화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## 마. 피해자 의사소통 조력 관련

- 제정안 제44조(피해자에 대한 정보 등 제공)와 관련, 제48조 및 제49조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시 의사소통을 의무화 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 지원을 의무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관련,

- 제정안 제48조 및 제49조는 피의자에 한정되지 않은 조항으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조사시에도 적용됩니다. 국민 모두가 제정안을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해주신 의견을 수용하여 “노력해야 한다”에서 “해야 한다”로 수정 반영하겠습니다.

**제44조(피해자에 대한 정보 등 제공)**

- ③ 경찰관은 외국인이나 청각 또는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통역인 등을 활용하여 해당 피해자에게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**해야 한다**.

**바.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**

- 청소년, 외국인, 장애인 외에 노인·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/약자에 대한 보호조항 마련에 대한 의견 관련,
- 노인복지법 제39조의8은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안 제35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 노인에 대해서는 제정안 제7조(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)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**제7조(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)** ② 경찰관은 수사등 과정에서 장애인, 19세 미만의 사람, 여성, **노인**, 외국인 등 신체적·경제적·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특별히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한다.

- 「한국수화언어법」에 따라 ‘수화’를 ‘수어’로 수정하도록 제안해주신 부분 관련, 법제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도 부합하므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.

**제49조(장애인에 대한 수사 시 유의사항)**

- ②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**수어·문자통역**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진술을 조력하도록 해야 한다.

- 경찰 수사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실천의 문제로 성소수자 등 관련 제도와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
## **사. 수사인권교육 관련**

- 수사인권교육에 대한 교육목표, 대상, 시기, 내용 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관련
  - 법령 체계 및 제정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수사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52조(수사인권교육)을 규정하였습니다.
  - 법령 제정 후 ‘인권 교육계획’ 수립 시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.